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071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성

판 결 선 고 2023. 6. 1.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제주)2018나10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E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D로부터 E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은 D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별지

원고 명단

- 1. I
- 2. J
- 3. K
- 4. L
- 5. M
- 6. AU(개명 전 이름: N)
- 7. O
- 8. P
- 9. Q
- 10. R
- 11. S
- 12. T
- 13. U
- 14. V
- 15. W
- 16. X
- 17. Y
- 18. Z
- 19. AA

20. AB

21. AC

22. AD

23. AE

24. AF

25. AG

26. AH

27. AI

28. AJ

29. AK

30. AL

31. AM

32. AN

33. AO

34. AP

35. AQ

36. AR

37. AS

38. AT. 끝.

